

회 칙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 칙

[1988. 12. 01. 제정]
[2004. 05. 08. 개정]
[2007. 02. 10. 개정]
[2009. 02. 07. 전문개정]
[2010. 11. 18. 전문개정]
[2013. 03. 01. 전문개정]
[2015. 03. 14. 일부개정]
[2017. 05. 13. 일부개정]
[2018. 01. 20. 일부개정]
[2019. 09. 21. 전문개정]
[2020. 12. 18.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총동문회 또는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회원 상호간의 화평(和平)으로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2.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3.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육군학사장교로 임관한 자.
2. 준회원은 학사장교 임관예정자, 육군학사장교 장학생으로 임명된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이념 및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자.
3. 명예회원은 학사장교로 임관 또는 전역한 자의 가족 또는 본회에 공헌한 바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가 명예회원으로 의결한 자.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과 본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회칙과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1. 총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함)
2. 감사
3. 수석부회장
4. 상임부회장
5. 부회장
6. 위원장
7. 특별보좌관
8. 명예회장
9. 고문
10. 자문위원

제 9 조 (회장의 선출과 임기)

1.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선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의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다수인 경우 선임 기수 순으로 하고 기수가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4. 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회장후보의 자격심의는 특임위원회에서 한다.

제 10 조 (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임시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 의장이 된다.
2. 본회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3.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
(당연직 임원은 맥·기수별회장, 지구회장, 지회장 및 직능회장 등이다.)
4.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및 감독

제 11 조 (감사의 선출과 임기, 임무)

1.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2. 감사는 2명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감사 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는

투표로 다득표자 2인을 선임하고 2인 이하인 경우 찬반 표결로 선임한다.

3.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며 대의원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단 감사한 내용 중 감사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은 보고할 수 없다.
4.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감사 2인중 임관이 빠른 선임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후임감사는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무)

1. 수석부회장은 맥•기수별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부회장은 임관 30년이상 기수 대상 맥•기수별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연직 상임부회장(맥•기수별 회장, 지구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회장은 임관 25년이상 기수 대상 맥•기수별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연직 부회장(지회장, 직능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장은 맥•기수별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특별보좌관은 맥•기수별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6. 고문은 이사회에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7.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1. 수석부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회장 및 임원의 의무)

1. 회장 및 임원은 본회의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수범 참여한다.
2. 회장 및 임원은 분담금을 납부한다.
3. 회장 및 임원의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5 조 (특별보좌관)

1. 특별보좌관은 본회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한다.
2. 특별보좌관은 약간명으로 한다.

제 16 조 (명예회장) 역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한다.

제 17 조 (고문).

1.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한다.
3. 고문은 약간 명으로 하되,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8 조 (자문위원)

1. 맥·기수별 회장, 지구별회장을 역임자중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한다.
3. 자문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되,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9 조 (회장의 해임)

1. 회장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본회의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회장의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2. 해임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감사의 해임)

1. 감사가 사실 확인 없이 감사 1인 단독으로 감사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감사의 직무상 등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회장은 서면으로 감사의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2. 해임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및 기 구

제 21 조 (대의원총회) 본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총회를 둔다.

1. 구성 및 회의

- 가. 대의원 총회는 회장, 감사,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임명직상임부회장. 위원장, 단장, 임명직부회장, 특별보좌관, 맥기수회장, 선출직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나.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의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와 불가항력의 경우 비대면 또는 서면총회로 개최할 수 있다.
- 다. 회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에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홈페이지 및 회원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매체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 라. 대의원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을 지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 바. 대의원 총회 회의는 회장이 주관하고 단, 회장·감사를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한다.
- 사. 대의원 총회 회의의 내용은 작성자, 작성일자,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장·감사를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 아. 회장, 감사, 명예회장, 맥기수회장, 수석부회장, 임명직상임부회장. 위원장, 단장, 임명직부회장, 특별보좌관, 사무총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자. 선출직 대의원은 맥•기수별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차. 회장 출마자, 감사 출마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 대의원의 수

가. 대의원의 수는 전체 회원의 0.5% 이하로 한다.

다. 당연직 대의원은 전체대의원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다. 선출직 대의원의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인원으로서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

라. 선출직 대의원은 임관 인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율은 임관 맥•기수별 250명당 1명으로 배정한다. 단, 맥•기수별 동기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수에 한하여 대의원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마. 대의원선정은 직책분담금과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본회 또는, 맥•기수별 동기회의 활동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의결사항

가.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나. 이사회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본회의 회칙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의 승인

제 22 조 (이사회)

1. 구성 및 회의

가. 이사회는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위원장, 단장으로 구성한다.

나.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와 불가항력의 경우 비대면 또는 서면통회로 개최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라.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을 지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마. 회의의 내용은 작성자, 작성일자,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참석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의결사항

가.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나. 본회의 회비 및 임원 등의 분담금액

다. 기타 본회의 주요한 사항

제 23 조 (회장단 회의)

1. 구성 및 회의

가. 회장단회의는 회장과 맥•기수별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와 불가항력의 경우 비대면 또는 서면총회로 개최할 수 있다.

다. 회장단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라.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을 지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마. 회의의 내용은 작성자, 작성일자, 의결사항 전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참석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의결사항

가. 회장과 맥•기수별회장이 부의한 사항.

나. 기타 본회의 주요사항.

제 24 조 (분과위원회)

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특정한 과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인사윤리, 재정, 학사발전, 동반성장, 제도발전, 언론홍보위원회와 재난구호단, 취업경쟁력지원단, 학사동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3.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반드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인원은 가감할 수 있다.
4. 분과위원장은 맥•기수별회장의 추천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6.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각 분과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인 규칙 및 위원회 시행규정을 반드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8.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9. 2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10. 위원회에서 논의된 회의내용은 작성자, 작성일자,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25 조 (인사윤리위원회)

1. 회원의 신상필벌을 위한 규정을 정하고 시행한다.
2. 본회의 회원의 신상필벌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단, 회장의 해임에 대하여는 논의할 수 없다.
3. 인사윤리위원회는 동문간의 사기 또는 기타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기구를 두고 신고, 접수된 정보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4. 본회 회원이 동문 간 사업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정보 요청을 서면으로 한 경우 동문 간의 사기 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 후 동문 간의 사기 또는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6 조 (재정위원회)

1. 본회의 재정에 대하여 관리 운영 및 각종 계획서에 의한 진행과 사업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2. 동문들의 회비를 합리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등을 기획 추진한다.

제 27 조 (학사발전위원회)

1. 학사장교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2. 후배기수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과 명품학사장교단이 될 수 있게 기획 추진한다.

제 28 조 (제도발전위원회)

1. 본회의 불합리적인 회칙을 제거하고 보다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회칙을 발전시킨다.
2. 분과위원회규칙 및 규정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요청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와 함께 회원의 신상필벌 규정을 정한다.

제 29 조 (동반성장위원회)

1.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동문기업간 상호 교류를 통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 30 조 (취업경쟁력지원단)

전역동문들을 취업 및 창업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 31 조 (언론홍보위원회)

1.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대언론 홍보 활동을 한다.
2. 본회의 언론 홍보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 추진한다.
3. 동문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국방 등에 대한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
4. 정통성 수립을 위하여 각종 기록물과 사료를 조사 수집하여 보존 관리한다.

제 32 조 (재난구호단)

1. 국가와 국민이 재난을 당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지원한다.
2. **재난구호단 이사장은 현 총동문회장이 겸직하며, 재난구호단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3. 재난구호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난구호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 33 조 (학사동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학사장교를 사회적으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동문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수 있는 동문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 34 조 (사회·복지위원회)

1. 학사장교의 사회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2. 현역동문들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와 사회적으로 취약한 동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3. 동문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지원 사업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4. 학사장교 동문 중 사회저명인사를 발굴하여 본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기획 추진한다.

제 35 조 (특임위원회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목적 : 본회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최우선적으로 동문간의 화평을 위하고자 함에 있다.
2. 구성 : **회장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동문회장을 역임 한 명예회장으로 구성한다.
3. 임무 : 1)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장후보자를 심의하고 심의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2) 심의 완료된 **회장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3) 현역육군학사장교 동문을 위한 지원과 복지에 힘쓴다.
4. **의결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제 36 조 (사무처)

1.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사무총장과 2명의 유급사무원을 임명한다.
2. 구성 :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처, 국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기능 : 가. 사무처는 본회의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나. 감사의 요청에 의한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하여 7일 이내 제출한다.
다.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업무 협조 요청시 지원을 한다.
마. 본회의 공식마크, 로고, 엠블럼 등을 관리하는 규정을 만든다.
바. 본회의 공식사이트(홈페이지 및 네이버 밴드)를 관리한다.
공식사이트상에서 발생하는 인신공격 또는 회원상호 비방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 또는 인사위원회의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본회의 모든 회의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5.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6. 사무처는 모든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본회에 대한 제반 업무를 알리고자 할 때 예는 매체에 게재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선거 및 각종 선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주관한다.
2.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인원은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기능 : 가. 총동문회장 선거관리
나. 감사 2인 선거관리
다. 대의원총회에서 개최하는 선거를 관장 및 주관

4.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다, 2인중 임관기수가 빠른 감사가 하며 같은 기수인 경우는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선임된다.
5.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6. 감사가 연임하여 출마할 경우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 38 조 (맥·기수별 동기회, 지구별 동문회 및 해외동문회의 설립)

1. 본회는 맥·기수별 동기회, 지구별 동문회, 해외동문회, 기타 직능별 동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들 동기회 또는 동문회 등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맥·기수별, 지구회 이취임식에 총동문회장이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기수회기, 지구회기 이양식을 이행함으로써 승인한다.
단, 총동문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대리자가 참석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동기회나 동문회를 설립하거나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명칭과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를 동문회보인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지구회는 30개 이상을 둘 수 없다.

제 39 조 (지회 및 분회의 설치)

1. 본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으로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별, 사회분야별 또는 직장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들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지회는 하부조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 또는 분회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즉시 명칭 및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하고 본회는 승인 후 이를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장이 변경된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제 5 장 재 정

제 40 조 (재정) 본회의 모든 재정은 회비, 임원의 분담금, 기부금, 찬조금 등과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또한 특수목적으로 이루어진 모금과 관련한 자금은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서 특수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의결할 경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특수목적에 위한 위원회 또는 단체를 해체 승인을 받아 모금된 돈은 기부 또는 찬조, 후원한 자 등에게 돌려주거나 기부 또는 찬조, 후원한 개인 등에게 타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한다.

제 41 조 (회비)

1. 회비는 총동문회 연회비, 직책분담금, 기부금, 찬조금 등으로 구분하고,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회비의 분담 내용은 재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42 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6 장 사 업

제 43 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정기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하며, 정기사업은 대의원 총회, 특별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4 조 (사업 주관)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의 명칭이나 명의 또는 육군학사장교를 지칭하는 KAOCS를 사용하여 사업을 개설,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심의한다.

제 45 조 (참여) 본회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장 상 별

제 46 조 (포상) 회장은 본회 또는 대한민국 학사장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단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도 의결하여 포상할 수 도 있다.

제 47 조 (징계) 회장은 본회 또는 대한민국 학사장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맥•기수별 동기회 또는 해당 지구회에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8 조 (상별 규정) 본회의 상별에 관한 세부내용은 인사위원회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개정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회칙 개정 당시 동문회에 등록된 맥•기수별 동기회, 지구별 동문회, 해외동문회와 사회분야별, 직장별 지회는 설치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 2 조 본 회칙은 개정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회칙 개정 당시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고문, 자문위원, 특별보좌관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본 회칙은 개정이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 회칙 및 관련 규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선거관리시행규칙

【 1994년 3 월 3일 제정 】

전면개정 2010. 11. 18
일부개정 2014. 10. 11
일부개정 2018. 1. 20
일부개정 2019. 09. 21
일부개정 2020. 12. 18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회칙 제9조(회장의 선출과 임기) **제 11 조(감사의 선출과 임기)**의 규정에 의하여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사무 협조)

본회 사무처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 요구를 공문으로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1. 사무처는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4 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1.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총동문회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하여 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 5 조(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과 사무처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6 조(선거권)

1. 회원으로서 정기총회 대의원명부 확정일 당시 대의원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2. 회칙 제21조(대의원총회)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대의원이 된다.

제 7 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으로로서 공직선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8 조(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1. 회칙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회칙 제46조(징계)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4.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5. 재판에 계류중인 자

제 9 조(위임)

선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정의 위임장의 제출 또는 실명의 SNS를 통하여 위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단, 대리인 지정위임자는 대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0 조(설치 및 구성)

1. 선거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칙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제2항에 의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을 제외한 9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9인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단, 회장 출마자, 감사 출마자,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

한다. 단, 부위원장은 입관 연도가 빠른자 또는 같은 입관 기수인 경우 군번이 빠른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 11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3. **본회에 등록상황 보고 및 회장후보자 2인 이상인 경우 특임위원회에 통보**
4. 선거인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6.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7.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와 선거인단 및 회원에 대한 제재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제 12 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입관연도가 빠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이 총동문회의 선출직에 출마할 때에는 위원장의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13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장 및 감사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 14 조(소집 및 의사)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일자, 참가자 서명을 하고 영구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결시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 16 조(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명부

제 17 조(명부작성)

1.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회칙 제 21조에 제2항에 의하여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대의원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8 조(명부열람)

위원장은 대의원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의원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19 조(명부의 정정 등)

1. 위원장은 열람기간을 포함하여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대의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정회원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3일 이내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대의원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명부의 확정)

1. 대의원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7일전까지 확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1 조(명부 사본의 교부)

위원회는 선거인단명부가 확정된 경우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후보자

제 22 조(후보자등록)

1.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공고 개시일 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입후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나. 서약서(소정양식)
 - 다. 당해년도 회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라. 기탁금
3.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없다.
5.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3 조(등록무효)

1.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나. 제22조(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기탁금)

1. **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회장 후보자**등록 접수날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총동문회장 기탁금은 일금 **3,000**만원으로 한다.
3.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회비로 본회에 귀속된다.
4. **회장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회비로 본회에 귀속한다.
5. 회칙 제35조(특임위원회 :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에 의거 **회장 후보자** 추천이 되지 않은 **회장 후보자** 경우는 기탁금을 기탁한 **회장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제 6 장 선거운동

제 27 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회원은 누구든지 이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28 조(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 29 조(선거기간)

1. 선거기간은 23일로 한다.
2.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30 조(선거일)

선거일은 선거 30일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1 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회칙 46조(징계)의 규정으로 징계를 받은 회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 32 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선거홍보물)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전벽보
 - 2) 소형인쇄물
2. 홍보물의 배부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홍보물의 게재내용, 규격, 배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4 조(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1.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와 불가항력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담 및 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4. 대담 및 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5 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 향응, 교통편의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대의원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
3. 후보자가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각종 동기회 및 지구회, 지회 등을 방문하거나 회원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4.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5.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 도화, 기타 인쇄물의 배포, 발송 행위

제 7 장 선 출

제 36 조(선거방법)

1. 선거는 투표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와 불가항력의 경우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 투표제로 한다.
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및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7 조(투표 및 개표)

1.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표와 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8 조(개표장의 질서유지)

1. 개표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당선자 결정)

1. 당선자 결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단 투표 전 위원장은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 당선자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0 조(당선자 결정 공고, 통지 등)

규칙 제 39 조(당선자결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벌 칙

제 41 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 42 조(주의 및 경고)

위원회가 규칙 제 41 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 43 조(불복신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제 43 조(불복신청)

1. 규칙 제 41 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2014. 10. 11)

제 1 조 2014년 10월 14일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2018년 1월 20일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조 2019년 09월 21일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사윤리위원회 규칙

【 2020년 12월 18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인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칙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함)의 회칙 제24조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동문(이하 “회원”이라 함)에 대한 포상과 본회의 화평을 저해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와 **동문간 사기 및 피해를 방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총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함)이 평소 회원 간에 덕망과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회원 중 한명을 선임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 연령대별 맥·기수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직무에 적합한 회원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회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본회의 회칙 제45조, 제 4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본회 발전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반사회적 활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한 징계.
2. 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과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예하 상벌소위원회와 상벌소위원회 관리규정을 정하여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5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5.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 총동문회 사무실에 보관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서명부
3. 각종 결의 안건
4. 토의사항과 그 내용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안건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내용을 부위원장과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 및 조사하여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1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본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 직무의 배제)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되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의 회원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해 위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해 축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15조(합동연석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집행)

위원회의 경비집행은 아래와 같이 집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경비는 본회에 청구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호, 2019.9.21.>

제 1조 (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상벌 및 윤리관리규정

【 2020년 12 월 18일 제정 】

본 관리규정은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 한다.) 예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벌 및 윤리관리규정**으로서 그 목적과 일체의 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총동문회 회칙 제2조(목적)와 관련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통해 회원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는 포상하며, 총동문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불이행 등을 한 회원은 징계하고 **회원의 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총동문회의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및 회의)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에 **상벌 및 윤리소위원회**를 두며 포상과 징계의 관리에 관한 심의, 조사, 의결, 제청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회원의 사기 및 피해사례 관련 정보요청에 대한 심의를 한다.**
2. **상벌 및 윤리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윤리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상벌윤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연령대별 맥·기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3. 본회의 포상과 징계의 사유와 **윤리 심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상벌 및 윤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4.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심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임관기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선임임관기수 위원이 2인 이상일경우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 (포상)

1. 포상은 본회의 회칙 제45조와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회원에게 포상하며 포상의 종류로는 자랑스런 학사인 대상, 자랑스런 학사인상, 특별공로상, 공로상, 감사패,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2.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부상으로는 상금과 기념품을 줄 수 있다.
3. 본회의 포상은 육군학사장교 포상기준을 준수한다.

제4조 (시상, 후원, 추천, 심의)

1. 총동문회와의 유관기관과 단체가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상 및 후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그 적부를 가려 상장(패) 발급과 후원 명칭 사용을 허가한다.
2. 상장(패)의 훈격은 총동문회장상으로 한다.
3. 추천 관련으로 제4조 1항의 경우 공로가 지대한 회원은 유관 기관에 표창을 상신 또는 의뢰할 수 있다.
4. **회원 정보를 요청한 경우 회원의 정보제공 여부를 심의한다.**

제5조 (징계사유)

1. 징계는 총동문회의 회칙 제46조와 관련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총동문회의 명예실추, 재정손실, 의무불이행, 회원의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때
3. 총동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총동문회 회원을 근거 없이 음해·모함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때
4. 총동문회 회원 간 민·형사 범죄로 유죄확정이 발생할 때
5. 징계에 대한 의결이 확정된 후 해당 징계처리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때
6. **총동문회의 승인없이 육군학사장교 명의 사용하여 사업을 개설 영위하거나 사회관계망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제6조 (징계의 절차)

1. 총동문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인사윤리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의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서와 확인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충분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징계의결 요구서와 확인서를 검토 후 접수여부를 징계를 요청한 회원에게 알려준다.
3. 징계 등 의결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본회 공식사이트(홈페이지, 네이버 밴드)에 게재하고, 그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 등 의결을 할 때에는 공식사이트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7. **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민·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해당 동기회나 동기회 임원, 5인

이상 회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고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8. **위원회**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체류 또는 국외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 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 3항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제8조 4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0. **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의견서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11.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벌소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징계 등의 의결을 신청한 자는 상벌소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의 종류 및 징계권자)

1. 회원의 징계는 상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징계의 사유가 약할 때는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계도 할 수 있으며 중징계일 때는 상벌소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중징계
 - 1) 제명 (본회 및 각급 동문회에서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활동정지 및 영구제명)
 - 2) 자격정지 (본회 및 각급 동문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 정지 1년 이상)
 - ② 경징계
 - 1) 견책 (본회 제반권리 정지 1년 이상) 2) 경고 3)사과(공개)
4. 회원의 제명과 자격정지는 상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동문회장이 시행한다.
5. 기타사항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

1. 징계 건명은 징계양정기준의 징계사유 중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상벌소위원회는 징계종류를 정함에 있어 징계 양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며,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

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한다.

4.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한다.

제9조 (징계 의결통고)

상벌소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권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의 복권)

상벌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복권을 결정하는 심의를 할 수 있다.

1. 형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후 무죄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될 때.
2. **위원회 양식증 복권 심의서와 복권 사유서를 작성하여 인사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복권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 후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복권 찬성동의를 득하여야 복권을 결정한다. 단, 조직분열과 위계질서 위반을 이유로 제명된 자는 복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해관계 직무의 배제)

위원회는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동기회, 본회의 소속된 동기회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의 회원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해 위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경비집행)

위원회의 경비집행은 아래와 같이 집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경비는 본회에 청구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호, 2020. 12. 18.>

제 1조 (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포상 기준표

● 자격기준 : 본회 회칙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한자와 각급 동문회, 기관 및 단체와 개인.

구분	활동부분	포상대상	포상내용	포상자 예우
자랑스런 학사인 대상	전 분야	• 본회 회칙2조 목적에 크게 기여한자와 단체	• 상패와 격려금, 학사명예 메달	• 본회 주관 행사 시 vip대우 / 내빈 소개 / 본회 홈페이지 수상내역기록
자랑스런 학사인 상	동문회(단체) 분야	• 기부금 합산 5,000만원 이상 납부한 각급 동문회	• 상패와 격려금, 단체수치	• 본회 주관 행사 시 vip대우 / 본회 홈페이지 수상내역기록
	봉사 분야	•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자 • 본회, 제 동문회에서 봉사한 자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군사 분야	• 장관급 공직자로 선출된 동문 • 대통령급 표창자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공공/문화 분야	• 장관급 공직자로 선출된 동문 • 대통령급 표창/명장 수상자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경제(재정)분야	• 기부금 합산 3,000만원 이상 납부자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특별 공로상	동문회(단체) 분야	• 기부금 합산 3,000만원 이상 납부한 각급 동문회	• 상패와 격려금, 단체수치	• 본회 홈페이지 수상내역기록
	봉사 분야	• 본회 및 제 동문회에서 봉사한 자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군사 분야	• 군사분야에 크게 기여하여 포상심의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공공/문화 분야	• 공공/문화분야에 크게 기여한자로 포상심의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경제(재정)분야	• 기부금 합산 2,000만원 이상 납부자 • 포상심의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격려금, 기념품	

공로상	동문회(단체) 분야	• 기부금 합산 2,000만원 이상 납부한 각급 동문회	• 상패와 기념품	
	봉사 분야	• 포상 심의 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기념품	
	군사 분야	• 육군근속 30주년 대상자 • 포상심의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기념품	
	공무 분야	• 공직근속 30주년 대상자 • 포상심의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기념품	
	경제(재정)분야	• 기부금 합산 1,000만원 이상 납부자 • 포상심의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기념품	
감사패	봉사 분야	• 포상 심의 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기념품	
	경제(재정)분야	• 기부금 합산 500만원 이상 납부자	• 상패와 기념품	
위촉패	동문회분야	• 이임 총동문 회장	• 상패와 기념품	• 명예총동문회장으로 예우
	전 분야 (홍보대사 포함)	• 명예학사인상 심의통과한 자와 단체	• 상패와 기념품	

※ 포상대상과 와 포상내용, 포상시기, 포상자 예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2 :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징계양정기준

징계사유	처리기준				
	제명	자격정지	견책	경고	사과 (공개)
본회 및 동기회 조직분열을 주동한 자 및 동조자	○				
본회 및 동문 간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			
정치, 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총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회원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이 유죄확정이 될 때	○	○			
회원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			
회원을 상대로 단순추행, 불법촬영		○	○	○	○
회원을 상대로 강·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			
회원을 상대로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폭언/욕설행위		○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리업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자		○	○	○	○
총동문회를 사칭한 문서위조/변조행위		○			
회원을 상대로 비방행위 (사회관계망 포함)		○	○		
회원을 상대로 한 유언비어 유포/강요한 자 (사회관계망 포함)		○	○		
회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교제 강요		○	○	○	○
회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모욕		○	○	○	
본회 소유의 재산손괴		○	○	○	○
기타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	○	○

※ 처리기준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적용하여 징계 처리기준을 의결하여 적용 한다.

- **가중요소** : 본회를 비방 및 모략 행위(사회관계망 포함)를 통해 본회 조직분열 및 본회 회원들이 본회에서 활동을 저해,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가중적용
 행위 형태와 상태의 중대, 피해정도 및 결과의 중대, 행위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에 해당, 행위자의 의도적, 계획적 의욕, 동종전력(행위의 상습성, 반복성)고려, 사회적 물의 야기, 학사장교 동문으로서의 명예실추, 사건의 은폐/축소의도, 다수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 가중적용.
- **감경요소** : 행위 형태와 상태의 경미, 피해정도 및 결과의 경미, 과실에 의한 위반 (중과실 제외), 과거 징계경력이 없음, 반성 정도 및 평소 회원 간의 생활태도 등, 우발적, 일회성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감경적용.

재정위원회 규칙

【 2019년 9 월 21일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규칙은 회칙 제26조에 따라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이하 ‘본회’ 라 함) 의 건전한 재정 유지와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본회 화평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 따라 본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모금 및 집행 관련 안건을 심의 및 검토를 한다.

제2조(인원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반드시 회칙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단 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인원을 가감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총동문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맵•기회장으로 부터 추천받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3.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지원단 인원은 맵•기 동기회의 재정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3조(회의)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함)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3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5.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7. 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논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서식에 의한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처리)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5인 (2분의1) 이상의 동의로 상정하며,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가결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서명부
3. 각종 결의 안건
4. 토의사항과 그 내용
5. 기타 중요사항

제6조(안건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내용을 부위원장과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 및 조사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책무)

1. 위원회는 총동문회의 재정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2. 위원은 본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지인, 친족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해 위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운영

제10조(재정 구성)

총동문회의 모든 재정은 연회비, 분담금, 찬조(후원)금 및 수익 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또한 이사회에서 의결된 특수 목적으로 이루어진 모금과 관련한 자금은 이사회에서 특수목적상실되었다고 의결할 경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특수목적을 위한 위원회 또는 단체를 해체 승인을 받아 모금된 돈은 기부 또는 찬조, 후원한 자 등에게 돌려주거나 기부 또는 찬조, 후원한 개개인 등에게 타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한다.

제11조(재정 확보)

1. 재정 수입은 총동문회 연회비, 분담금, 찬조(후원)금 등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연회비의 규모와 분담금의 납부 종류 및 규모는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별표1, 별표2 참조)

3. 연회비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과 단체는 부여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회원은 총회 투표권, 보직, 경조 지원 및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단체는 총회 투표권 및 총동문회의 각종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4. 분담금은 직책별, 맥기, 지역/직능 등으로 구분 한다.
5. 분담금(맥기동기회 및 지구/지회)의 면제는 당해연도 해당 단체의 총동문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정위원회의 건의로 총동문회장이 이를 면할 수 있다.
6. 분담금의 납부를 면하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사유를 서면(양식)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소명하여야 한다. (양식 별표 #3)

제12조(회계년도)

1. 총동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해 축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축)

위원은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축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보 칙

제14조(합동연석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집행)

1.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경비는 본회에 청구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호. 2019.9.21.>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위원회의 이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비

1. 학사장교 정회원

구분	금액 (단위: 원)
회원 연회비	년 60,000원 이상 (월 5 천원 이상)
# 연회비 납입은 CMS 자동이체를 이용 (총동문회 2,000원, 나머지는 동기회 지분(수수료 포함)) - 월 5 천원(예) : 총동문회 2,000원, 동기회 3,000원 (수수료 포함) - 월 1 만원(예) : 총동문회 2,000원, 동기회 8,000원 (수수료 포함) * 동기회지분은 CMS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실 수령액은 수수료 정산 후 금액임)	

[별표 2] 분담금 내역

1.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원)
직책	총동문회장	년 3,000,000
	명예회장	금일봉
	수석부회장/감사	월 50,000(일시납 : 년 500,000)
	상임부회장 / 부회장	월 30,000(일시납 : 년 300,000)
	자문위원/특보	임관 25 주년 이상 월 30,000(일시납 : 년 30만) 임관 25 주년 이하 월 20,000(일시납 : 년 20만)
	위원장(단장)	월 50,000(일시납 : 년 500,000)
	사무총장, 부위원장(부단장)	월 30,000(일시납 : 년 300,000)
	사무처 처장/국장, 위원회 위원	월 20,000(일시납 : 년 200,000)
맥·기	사무처 차장	월 10,000(일시납 : 년 100,000)
	임관 20 주년 미만	월 50,000(일시납 : 년 500,000)
	임관 20 주년 이상	월 100,000(일시납 : 년 1,000,000)
지역 / 직능	임관 30 주년 이상	월 150,000(일시납 : 년 1,500,000)
	정회원 150명 이상	월 100,000(일시납 : 년 1,000,000)
	정회원 50명 이상 ~ 150명 미만	월 50,000(일시납 : 년 500,000)
	정회원 50명 미만	월 30,000(일시납 : 년 300,000)

※ 직책분담금 납부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별표 3] 분담금 납입면제 신청서 양식

분담금 납입면제 신청서

소 속		분담 내용	일금	원
분담금 납입면제 사유 : 6하 원칙에 의한 작성				
00동기회/지구/지회장 000 서 명				

사무처 운영 규정

【 2019년 9 월 21일 제정 】

【2020년 6월 12일 이사회 개정 】

【 2020년 12월 18일 정기총회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준용 및 적용

본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동문회 회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세부운영 과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처 상근 및 비상근직 임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범위 및 구분

총동문회의 업무범위는 상근 및 비상근 사무처 운영 및 관리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세부 운영지침을 규정한다.

제2장 사무처 운영

제3조 임 무

총동문회 사무처는 총동문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칙에 준 한 동문회 운영업무에 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및 자격

1. 사무처 요원은 동문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과장은 예외로 한다.
2. 사무처의 구성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한다.
3. 사무처의 직제는 사무총장 예하에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두며 근무 및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직원의 채용 및 근무

1.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동문회원자격자 중에서 임관기수 등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 총동문회장이 채용 및 임면하며, 사무과장은 동문회원 또는 비회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사무처직원 채용 시 고려사항으로 동문회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품행과 언행이 바르고 헌신과 봉사정신이 충만한 자로서 시대상황에 걸 맞는 행정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한자를 선발 채용하되 사무총장은 정책기획 능력을 구비하고 조직관리 능력 구비자를 선발한다.

3. 사무처 직원은 별도의 영리상근 직장을 겸임할 수 없다. 채용 전 영리상근직장을 가진 자는 사퇴 후에 채용에 응할 수 있으며, 근무 중 이권과 관련된 어떤 단체나 사업장에 적을 가질 수 없다.
4. 사무처 직원의 채용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
(단, 본 규정제정 적용일 이전 채용된 계약근무자는 1년 단위 만료일 기준으로 재계약 채용한다.)
5. 직원의 해임 시는 계약기간을 준수하되 단, 성실근무위반 등의 해임사유 발생 시는 계약기간 전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총동문회는 해임대상 직원에게 1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직원에 의한 희망퇴직은 퇴직일 2개월 전 총동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직책별 업무

다음과 같이 사무처 직원의 업무는 구분하여 수행하되 상황과 여건을 고려 총동문회장은 직책별 직무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직 책	내 용
사무총장	① 연간 사업계획/예산편성 및 추진/결산분석 ② 각종행사, 회의소집 및 개최 / 회의 진행. 회의록 및 의사록작성 보고, ③ 사무처 주간. 월간 업무종합/ 회의준비 및 결산 주관 ④ 지역동문회, 각 동기회, 예하단체, 동호회 활동사항 종합 보고 ⑤ 유관기관 및 대외관련기관 활동자료 수집 및 보고 ⑥ 동문관련 언론보도내용 종합 및 대응책 수립 보고 ⑦ 각종회의 시 당연직 간사업무 및 학사소식 등 발간물 기획 및 관리감독 ⑧ 각종 대외 행사시 회장 대리참석 ⑨ 문서보관/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회계관리/결산, 복지물 결산 감독 ⑩ 공식사이트 운영관리(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등)감독 ⑪ 일일 및 주간업무 결산 ⑫ 선거관리 업무 지원, 대의원 명부 작성 ⑬ 기타 총동문회장 지시사항 조치

직 책	내 용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무실 임대계약 및 동문회 사무실 운영관련 사항. ② 사무처 월간회의 서기업무/ 업무분야 의사록 작성 ② 복지물 운영 및 결산보고 / 각종 회의 준비(현수막제작 등) ③ 동문회 활동사항 공지(홈페이지, 카톡, 밴드 등) ④ 지역동문회, 각 동기회, 예하단체, 동호회 활동사항 파악보고, 공지 ⑤ 유관기관 및 대외관련기관 활동자료 수집보고(총장, 회장), 공지 ⑥ 동문관련 언론보도내용 파악보고(총장, 회장), 공지 ⑦ 각종 회의록, 발간물, 상패 및 기념품제작 등 계획보고 및 집행 ⑧ 각종 기념품의 재고관리 및 품목관리 / 월 단위 현황유지, 보고 ⑨ 지역기관 및 대민협조 업무 ⑩ 공식사이트 운영 관리(홈페이지, 밴드 등) ⑪ 일일 및 주간업무 결산 ⑫ 기타 사무총장, 총동문회장 지시사항 조치
사무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문회운영예산 결산(입.출금) ② 월간예산결산보고 및 결제 ③ 재난 구호단, 동문회관 건립위원회 예산/결산 월 단위 종합 및 보고, 공지 ④ 각종 공문, 발간문서저장 및 관리 ⑤ 문서접수 및 발송/은행업무 ⑥ 회의준비(명찰, 접수대장준비 및 접수/안내지원) ⑦ 동문회방문객 차 봉사 사무실 정리등 관리 ⑧ 일일 및 주간업무 결산 ⑨ 기타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동문회장 지시사항 조치

제7조 회의 및 업무결산

사무처 업무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동문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주관 하에 다음과 같이 정기회의 및 주기별 업무 결산을 실시한다.

1. 정기회의는 주간회의 와 월간회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주간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월간회의는 매주 셋째주차 월요일에 실시하며, 상황과 여건을

감안 회의일정 및 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주관자 판단에 의거 생략할 수 있다.

2. 업무결산은 일일, 주간, 월간, 반기, 년간 결산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일일결산은 회의소집 없이 온라인 전자문서화 결산제도를 적용하고, 주간, 월간, 반기, 연간 결산은 가능한 주기별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필요 시 별도 실시할 수 있다
3. 총회 및 이사회 등 회칙이 정하는 회의는 예산범위 내 운영을 고려하여 가능한 통합하여 시행한다.

제8조 급여 및 복지

1.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동문회장이 책정 매년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급여 및 4대 보험, 퇴직금 지급은 동문회운영과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총동문회운영 예산과 동문회관건립기금, 재난구호단 등은 예산에서 각각 구분 집행한다.
3.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휴가를 보장하고 근무시간 범위 내 총동문회장 재량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동문회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 추가적 근무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각종회의 및 행사 등 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한 시간 외 근무 시는 다음 날 출근 및 근무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만큼 휴무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단,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및 회계

1. 예산 및 회계는 총동문회 회칙 내용을 준용하고 회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산 및 회계업무 중 수입 및 지출업무는 사무처 직원 중 총동문회장이 임면하여 수행한다.
3. 예산결산은 월1회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 위주로 하여 총동문회장에게 보고 및 결재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매월 협조된 일정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예산의 지출은 관련 근거에 의한 예산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동문회장에게 보고 결재후 지출한다. 예산지출계획서는 각종 행사계획의 예산사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정기적 지출예산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직원채용면직 (성실근무 위배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 사무처 직원으로서 근무 중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총동문회장은 직원의 채용계약을 철회(고용법상 3인 이하 직장 감안)할 수 있으며, 채용계약 철회 시는 1개월 전 본인에게 통보한다, 단, 본인이 계약해지를 수용하지 못할 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상급 직위자 동문에 대한 물리적 행위 또는 욕설 과 인신공격행위 시
나. 음주추태로 품위유지손상 및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 시, 음란사생활 시
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적절한 담합, 법규 와 지시불이행. 월권행위 시
라. 기타 사무처 직원으로서 품행 및 언행 등에서 많은 지탄과 비판이 있을시
2. 근무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상당한 과실로 동문회에 피해를 가져왔을 시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과실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사무처 임원 조직 / 운영

제11조 사무처 임원조직

1. 사무처는 상근직 이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근 무급직으로 임원을 조직할 수 있다.
2. 사무처의 임원의 조직 및 임명은 사무총장이 각 맥·기수 동기회장의 추천 및 추인을 통하여 선발하며 총동문회장의 임면한다.
3. 사무처의 임원은 **사무부총장**, 현역처, 전략기획처, 조직지원처, 행정지원처 등 으로 편성하며, 필요시 가감할 수 있다.
4. 각 처의 처장은 임관기수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조직에 따라 여러 개의 처를 둘 수 있다.
5.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사무처 내 처, 국 등을 관리한다.**

제12조 각 처별 임무와 역할

1. 현역처
 - 가. 현역처는 현역 중에서 선발하여 현역을 대표하여 총동문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 나. 현역동문의 진급과 보직 등을 1년 단위로 파악하여 총동문회(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다. 군내의 여러 가지 현안 업무를 파악하고 총동문회(인사위원회) 관련사항을 확인 보고 및 조치한다.
 - 라. 현역동문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총동문회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는다.
 - 마. 현역처에는 영관국, 위관국, 각 부대별 동문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바. 현역처의 각 국장 및 차장은 현역처장이 현역 동문과 협의하여 선발 운영한다.

라. 기타 총동문회장(사무총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2. 전략기획처

가. 전략기획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 사업을 기획 및 시행을 지원한다.

나. 본회의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을 지원한다

다. 전략기획처에는, 대외협력국, 대내사업국, 행사기획국을 둔다.

라. 대외협력국은 본회 대외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협조한다.

마. 대내사업국은 본회의 각 위원회의 사업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지원한다.

바. 행사기획국은 본회의 각종 행사(정기/임시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문화체육행사 등을 기획, 계획, 준비, 시행한다.

라. 처장은 국장 3명을 선임하고, 국장은 차장을 약간명 임명운영할 수 있다.

마. 기타 총동문회장(사무총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3. 조직지원처

가. 조직지원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조직을 관리한다.

나. 본회의 각 동기회 및 지구/지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각 동문회의 활동을 확인 / 지원한다.

다. 조직지원처에는 조직1국(맥기동기회), 조직2국(지구회/지회), 조직3국(해외동문), 문화체육국을 둔다.

라. 각 조직국은 해당 조직의 동문활동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며, 해당 동문회의 분담금을 조기에 납부하도록 확인한다.

마. 문화체육국은 본회 년1회 시행하는 한마음페스티벌(가칭) 문화체육행사를 준비 시행한다.

라. 처장은 국장 4명을 선임하고, 국장은 차장을 약간명 임명운영할 수 있다.

마. 기타 총동문회장(사무총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행정지원처

가. 행정지원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회 행정에 관한사항을 보좌한다.

나. 본회의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특히 홍보, 공식사이트(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등)을 관리한다.

다. 행정지원처에는 언론홍보국, 공식사이트 관리국, 재정/총무국을 둔다.

라. 언론홍보국은 본회 언론홍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회의 홍보(소식지) 및 자료 관리를 한다.

마. 공식사이트관리국은 본회 홈페이지관리 및 네이버밴드(학사장교 총동문회SNS), 그리고 기타 필요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관리한다.

바. 재정/총무국은 본회의 재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기감사 자료를 종합한다.

사. 처장은 국장 3명을 선임하고, 국장은 차장을 약간명 임명 운영할 수 있다.

아. 기타 총동문회장(사무총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4장 사회관계망 운영

제13조(공식사이트 운영 종류 및 구성) 본회 조직운용의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해 회칙 제36조에 의거 공식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식사이트 소위원회를 둔다.

1. 공식사이트의 종류는 총동문홈페이지, 총동문밴드와 필요시 총동문회원 카카오톡 방으로 하며 각 공식사이트별 담당위원을 둔다.
2. 공식사이트 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총동문 사무총장이 겸임을 하며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사무국장, 언론홍보위원, 공식사이트 관리국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4. 공식사이트 소위원회 및 위원 임기는 총동문회 임원의 임기 종료 시로 한다.

제14조(공식사이트 소위원회 회의)

1. 공식사이트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안에 따라 온,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2. 공식사이트 소위원회는 매월1회 사무처 월례회의와 병행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회의를 할 수 있다.
3. 공식사이트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글(정치, 종교, 지역등)은 의결하여 삭제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표현(**본회의 조직분열/악해 목적 글 및 댓글**) 본회의 품위손상, 욕설 등)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결하여 경고조치 및 강제퇴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공식사이트에 사유를 명확 공지하여야 한다.
4. 공식사이트 소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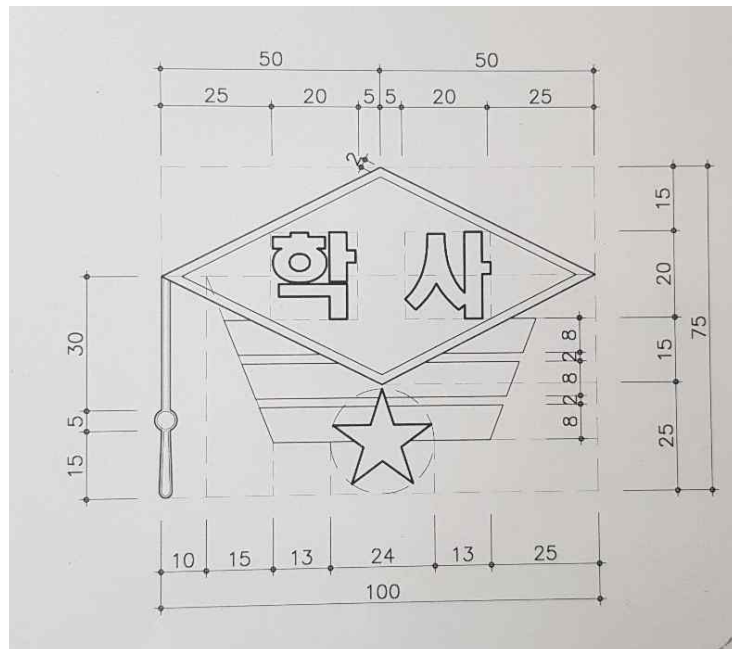
제5장 본회의 마크 및 로고 등의 관리

제15조(마크 및 로고 관리)

1. 회칙 제36조에 3항에 의거 본회의 마크와 로고는 본회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관리한다.
2. 본회 회원은 각종 행사 및 공식사이트에서 본회의 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맥기동기회 / 지구(지회) 등 본회 조직에 편성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의 마크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본회의 규칙과 규정의 의거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조치할 수 있다.
4. 본회의 마크와 로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 변경할 수

있다.

5. 본회의 마크와 로고(KAOCS : Korea Army Officer Candidate School)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기총회(이사회) 의결 일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항은 본 규정 적용으로 기 시행된 것으로 보며 단, 금전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경과규정제한 없이 적용한다.

제3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